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남궁역 의원(찬성자 29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1283 호

다. 발의일자 : 2023. 10. 10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0. 23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제3호 ‘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’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‘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7조제1항제5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57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시 고려사항에 “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2.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·가스·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3.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.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<u>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-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1항¹⁾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취지 및 범위에 부합한다 할 수 있음.
- 한편,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 제2조제13호에 따르면, 노인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
- 이들 계층의 경우 신체 및 판단 능력이 약하고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활동에 취약할 수 있는바,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- 다만, 현행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보면, 노유자 시설 피난기구 설치, 소방·가스·전기 시설 등의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, 취약지역 환경개선,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를 위

1) 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.

한 마스크 등의 용품 등 지원사항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,

- 개정안의 ‘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’의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해 상당히 폭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원 품목 선정 시 시장의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음.
- 참고로,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·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119 연계 등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재감지기, 활동량감지기, 출입감지기,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음.

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

- 사업내용 :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조치
 -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 전송하는 댁내장비 설치
 - 댁내장비 시스템을 통해 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조치
 -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·연계
- 운영방법 : 지역센터에서 댁내장비 운영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가구 모니터링
 - 화재발생 : 게이트웨이 통해 119자동신고 및 응급관리요원에서 문자 발송
→ 상황파악 후 조치(소방대원, 응급관리요원)
 - 응급호출 : 게이트웨이 또는 응급호출기 누름→119신고 및 응급관리요원에서 문자 발송→상황파악 후 조치(소방대원, 응급관리요원)
 - 활동량 미감지 :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활동 미감지 정보 전송→응급관리요원 상황 파악(전화, 영상전화 등) 및 조치

※ 설치장비 (1set): 게이트웨이, 활동량감지기, 화재 감지기, 출입문 감지기, 응급호출기

○ 맥내장비

구분	기능			
 <p>게이트웨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격 생활유용정보 음성 정보 제공 - 응급상황발생 시 119자동신고 기능 - 119에서 응급발생 신호를 받으면 대상자 주소 등 확인 - 감지기들로부터 센싱 정보를 원격으로 저장·관리 			
 <p>화재감지기</p>	 <p>활동량감지기</p>	 <p>출입감지기</p>	 <p>응급호출기</p>	
<p>연기감지 시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전송</p>	<p>대상자의 활동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전송</p>	<p>출입문 개폐 시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 무선통신으로 전송</p>	<p>응급호출기 버튼 누를 시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 무선통신으로 전송</p>	